

◎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기획처 제 - 1380호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근거조항 신설
- 무정원학과 운영 근거조항 신설
- 대학 조직 개편
- 융합전공 학위 추가

2. 주요내용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근거조항 신설
- 무정원학과 운영 근거조항 신설
- 국제컨벤션본부 신설
- 융합전공 학위 종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참조 :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ac.kr>)의 “학사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전화 : 064-741-6570, 팩스 : 064-741-7545)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학정원이 없는 학부(과)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학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특정 비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대학교에 전임교원 외에 강사 및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등), JA(Joint Appointment)교원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대학교에 기획관리본부, 교학본부, 산학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 국제컨벤션본부를 두고, 기획관리본부에는 기획관리부총장보를, 교학본부에는 교학부총장보를, 산학협력본부에는 산학협력부총장보를,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총장보를, 국제컨벤션본부에는 국제컨벤션부총장보와 본부장을 둘 수 있다.

[별표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융합전공 학위의 종별

융합전공명	학과	학위종별
지능형콘텐츠융합전공	방송영상학과, 인공지능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지능형콘텐츠학사
지능IoT융합전공	AI융합학부, 간호학부	지능IoT학사 지능IoT전문학사
AI콘텐츠	방송영상학과(4), 인공지능학과(4), 산업디자인학과	AI콘텐츠학사
AI빅데이터	호텔경영학과(4), 호텔외식경영학과(4), 국제경영학과(4), 인공지능학과(4)	AI빅데이터학사

AI빅데이터	관광경영과(2), 호텔조리과(2), 레저스포츠과(2), 컴퓨터정보과(2), 컴퓨터멀티미디어과(2)	AI빅데이터전문학사
AI헬스케어	간호학과(4), 인공지능공학과(4)	AI헬스케어학사
AI헬스케어	임상병리과(3), 작업치료과(3), 응급구조과(3), 보건행정과(3), 물리치료과(3), 컴퓨터정보과(2), 컴퓨터멀티미디어과(2)	AI헬스케어전문학사
AI시스템제어	사회복지학과(4), 인공지능학과(4), 마산업자원학과(4), 마사학과(4)	AI시스템제어학사
AI시스템제어	임상병리과(3), 물리치료과(3), 작업치료과(3), 응급구조과(3), 방사선과(3), 보건행정과(3), 사회복지과(2), 유아교육과(3), 컴퓨터정보과(2), 컴퓨터멀티미디어과(2), 건축디자인과(3), 환경원예과(2)	AI시스템제어전문학사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6(무정원학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학정원이 없는 학부(과)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7(비교과 교육과정) 대학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5(비교과 교육과정의 학점인정) ① 특정 비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5(창업대체학점인정)	제27조의6(창업대체학점인정) <제27조의5에서 이동>
제27조의6(학점인정심의회)	제27조의7(학점인정심의회) <제27조의6에서 이동>
제50조의2(교직원) ① (생 략)	제50조의2(교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본 대학교에 <u>전임교원 외에 강사 및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등)</u> 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본 대학교에 <u>전임교원 외에 강사 및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등), JA(Joint Appointment) 교원을</u>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본부조직) ①본 대학교에 <u>기획관리본부, 교학본부, 산학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u> 를 두고, 기획관리본부에는 기획관리부총장보를, 교학본부에는 교학부총장보를, 산학협력본부에는 산학협력부총장보를,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총장보를 둘 수 있다.	제51조(본부조직) ①본 대학교에 <u>기획관리본부, 교학본부, 산학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 국제컨벤션본부</u> 를 두고, 기획관리본부에는 기획관리부총장보를, 교학본부에는 교학부총장보를, 산학협력본부에는 산학협력부총장보를,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총장보를, 국제컨벤션본부에는 국제컨벤션부총장보와 본부장을 둘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융합전공 학위의 종별 - 변경 전

융합전공명	학과	학위종별
지능형콘텐츠융합전공	방송영상학과, 인공지능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지능형콘텐츠학사

[별표 4] 융합전공 학위의 종별 - 변경 후

융합전공명	학과	학위종별
지능형콘텐츠융합전공	방송영상학과, 인공지능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지능형콘텐츠학사
지능IoT융합전공	AI융합학부, 간호학부	지능IoT학사 지능IoT전문학사
AI콘텐츠	방송영상학과(4), 인공지능학과(4), 산업디 자인학과	AI콘텐츠학사
AI빅데이터	호텔경영학과(4), 호텔외식경영학과(4), 국 제경영학과(4), 인공지능학과(4)	AI빅데이터학사
AI빅데이터	관광경영과(2), 호텔조리과(2), 레저스포츠 과(2), 컴퓨터정보과(2), 컴퓨터멀티미디어 과(2)	AI빅데이터전문학사
AI헬스케어	간호학과(4), 인공지능공학과(4)	AI헬스케어학사
AI헬스케어	임상병리과(3), 작업치료과(3), 응급구조과 (3), 보건행정과(3), 물리치료과(3), 컴퓨터 정보과(2), 컴퓨터멀티미디어과(2)	AI헬스케어전문학사
AI시스템제어	사회복지학과(4), 인공지능학과(4), 마산업 자원학과(4), 마사학과(4)	AI시스템제어학사
AI시스템제어	임상병리과(3), 물리치료과(3), 작업치료과 (3), 응급구조과(3), 방사선과(3), 보건행정 과(3), 사회복지과(2), 유아교육과(3), 컴퓨 터정보과(2), 컴퓨터멀티미디어과(2), 건축 디자인과(3), 환경원예과(2)	AI시스템제어전문학 사